

의안번호	2211262
의 퇴 인	안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1.
추계번호	25C3578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0조 (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)	(제1항) 시·도 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아래 사항을 추가 1.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운영·관리 ※(현행)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상황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 상황으로 한정 2.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의 사회서비스 개발·확산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32조 (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)	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하는 업무에 아래 사항을 추가 1.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2.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구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 (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2조 (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 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 서비스원과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2025년 보건복지부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·사업비·운영비 등에 149억 600만원을,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에 80억원의 예산을 편성

- 그러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시·도 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확대 또는 신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